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5년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2025. 3. 27(목)

■ 보고 사항

※ 2024년 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진행경과 보고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청원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사가 속한 공기업 산업진흥서비스군 총 12개의 기관 중 7개 기관(58%)이 상기의 사례 시 3일의 청원휴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일반적으로 장례절차가 2~3일 소요됨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협의 사항

〈노측 안건〉

1 자녀수당 중액 지급 요구

〈노동조합 제안〉

회의결과

-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공무원 자녀수당 관련 규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5.1.3)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족수당 증액을 요구하며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15조(기족수당)의 개정을 요청합.
 - · 1자녀 3만원 → 5만원, 2자녀 7만원 → 8만원, 3자녀 이후 11만원 → 12만원

〈사용자측 설명〉

○ 가족수당의 경우 24년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측에서 요구한 자녀수당 각 1만원씩 증액인에 대해 검토하였고, 올해 1월 1일자로 자녀 수에 따라 1만원씩 증액토록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 공사가 속한 공기업 산업진흥서비스군 현황 조사 결과 총 12개 기관 중 3개 기관만이 노측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족수당을 지급 중임을 확인하였음. 2025년 예산 편성 시 가족수당 증액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예산 소요를 파악하고 정부의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사용자측 설명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는 부분이니만큼 조속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길 바람.

2. 난임치료휴가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노동조합 제안〉

- 기존 공사의 난임치료휴가 규정은 직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4.7.2 개정)에 따라 공사 직원의 난임치료휴가 규정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술의 단계와 필요에 따라 시술할 때마다 유급휴가 제공으로 개정을 요구함
 - 공무원 규정(여성)
 - · 인공수정 등 시술 : 2일
 - 동결보존 배아이식 체외수정 시술 : 3일
 - · 난자체취 체외수정 시술 : 4일
 - 공무워 규정(남성)
 - · 정자체취 : 1일

〈사용자측 설명〉

○ 난임치료 휴가 확대와 관련 정부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특히 해당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각별히 검토하겠음.

〈사용자측 설명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회의결과

○ 현재 공사 직원들 중에서도 난임 치료를 하는 이들이 있음. 직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갖춰진다면 업무 복귀율과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조속히 검토해 주길 바람.

3. 생성형 AI 구독서비스 제공 요청

〈노동조합 제안〉

○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업무 혁신 도구로 자리잡고 있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사용자측 설명〉

○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T팀과도 협의하여 구독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약속함.

〈사용자측 설명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도 빠르게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정보보안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면 정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짐. 이미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사측에서 직원들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사측 안건〉

4. 5/2(금) 가족의 날 지정

〈사용자측 제안〉

○ 5/1-6일 연휴에 부담없이 가족친화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업무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연차를 활용하여 5/2(금)을 가족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함.

〈사용자측 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5/2(금)을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5.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규정 폐지

〈사용자측 제안〉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지적사항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자함.

회의결과

〈사용자측 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지적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 제5항은 보육수당에 대해 기관 예산을 추가로 투압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지침으로 보여지며, 공사보수규정의 취지는 소득세법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오히려 소득세법 상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의 비과세 한도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23년 12월 상향 개정되었음. 그러므로 보육수당 지급 규정 폐지는 반대하며, 소득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비과세 한도금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해줄 것을 요구함.

6. 공사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삭제

〈사용자측 제안〉

○ 2024년 방통위 종합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 외 유급휴일 운영 불가)으로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삭제하고자 함.

〈사용자측 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일과 가정의 균형, 직원 사기 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삭제에 동의하기 어려움.

7. 근속연수에 따른 4급 승진 관련 제도 폐지

〈사용자측 제안〉

○ 신입직원의 경우 근속연수 만 4년 경과 후 기간이 도래한 달의 익월에 4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사용자측 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신입직원의 입사 4년 후 4급으로 승진하는 규정은 과거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음. 신입직원 초임이 여전히 낮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를 폐지한다면 향후 회사 상황에 따라 신입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될 수 있음. 제도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늦어진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폐지는 동의할 수 없음.

회의결과

8. 유연근무(탄력근무) 제도 정비

〈사용자측 제안〉

○ 부서내외 원할한 업무협조 및 새벽시간대 근태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차출퇴근형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7시에서 8시로 근무시간 선택형집약근무형의 근무가능 시간대는 기존 오전 6시에서 8시로 탄력근무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해당 제도들을 정비하고자 함.

〈사용자측 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유연근무는 기본적으로 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팀장과 직원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또한 점점 업무 환경이 유연근무를 강화하는 추세로 강화하고 있느 상황에서 해당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 개정으로 보여짐으로 동의할 수 없음.

9. 고등학고 자녀 학비 지원 규정 폐지

〈사용자측 제안〉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및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사용자측 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 사회적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규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에 반대함.

회의결과

(참석위원 서명은 뒤쪽)

	사용자위원	서 명	근로자위원	서 명
참	사 장	0/5/12	위원장	0/250
위	경영혁신 본부 장	Stylu	정책기획부장	61334
원	기획조정실장	2 do Larl	총무부장	the on
서	경영관리국장	Ofmit	조직부장	75 mm
뗭	영업1국장	24	사무국장	2° m 40